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청양군, 예산군

내 용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며, 보조금으로 적립된 퇴직적립금 중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¹⁾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에서는 ‘○○○○○○○○’ 등 28개 사회복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시행 2015.12.24.)

지시설에서 퇴직한 종사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40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한 퇴직적립금 30,056,905원을 정부합동감사(2017. 10. 30.) 시까지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20,828,872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3,014,797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2,326,209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1,547,147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수는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1,040,21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수는

[시정]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환수 퇴직적립금 1,299,67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 하시기 바랍니다.